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체 일부 이용한 연구 관련 보고 의무 신설 등〉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8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시체 일부 이용한 연구 관련 보고 의무 신설 등	2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8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체 일부 이용한 연구 관련 보고 의무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관련 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 업무의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제9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3. ~ 5. (생략) <u><신설></u>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u>제9조의10(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보고)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u>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신설> 2. ~ 4. (생략) ② (생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11(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 업무 및 제9조의10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보고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최근 한 민간업체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카데바)을 이용하여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는데,¹⁾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한 규정은 없고,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에 대하여도 시체 일부 제공 관련 보고 규정이 없어 시체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 ② ~ ③ (생략)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2.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분석
5. 그 밖에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우리도 근육 실물 봐야”...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에 해부학 강의 논란, 조선일보(2024.6.17.), <https://v.daum.net/v/20240617004139805>

□ 이에 개정안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보고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런데, 현행법 제9조4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일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고, 해당 기관들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는 연구자’와 동일한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서 시체 일부를 제공하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연구에 관한 사항보다는 연구참여자의 유형과 신분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체 제공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련 근거가 현행법 제9조의8에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와 같이 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 관련 보고 업무 지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시스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개정안 제9조의10제1항 중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제9조의8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 취지는 시체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목적이나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므로,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 보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9조의8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이미 현행법에 구축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체 일부의 제공 및 연구 관련 적정 관리의 범위를 법 제9조의4에 따른 허가기관 외 시체의 기증 및 이용하는 의과대학이 포함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체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의과대학 또는 제9조의4에 따른 허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적절할 것임.

- (대한해부학회)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대상 범위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닌 전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이며, 규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아닌 시체해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의생명과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현황
------	----------------

허가 번호	기 관 명	허가일	연도별 시체의 일부 제공 건수			
			2021	2022	2023	합계
1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응용해부연구소)	2021-11-15	-	-	-	0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뇌은행)		6	-	1	7
2	강원대학교병원	2021-11-30	-	-	-	0
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2021-12-28	-	-	1	1
4	서울대학교병원	2021-12-28	-	8	10	11
5	삼성서울병원	2022-01-25	-	-	-	0
6	인제대학교	2022-01-25	-	-	-	0
7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2022-03-29	-	-	3	3
8	부산대학교병원	2022-05-31	-	-	-	0
9	전남대학교병원	2022-07-22	3	-	7	10
10	충남대학교병원	2022-12-29	-	-	-	0
11	명지병원	2023-05-02	-	-	-	0